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김은혜 · 이만희
이소희 · 이종배 · 서천호
권영진 · 김대식 · 강명구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·묘소 등이 있으나, 오랜 시간과 관련 기록의 부재 등으로 그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

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,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·보존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신설).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문화유산 가치 조사 신청) ①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,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의 방법·절차,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·방법, 검토 결과의 통지 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기간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문화유산 가치 조사 신청) ①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,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의 방법·절차,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·방법, 검토 결과의 통지 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기간·방법</u>

	·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